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Tax reduction plan
for general income tax in 2020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I.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간 및 계산구조,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상품 중개업	7.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III.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6%~45%)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IV. 절세방안

1. 미수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대손상각비란 회수가 확실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실로 처리하거나 대손 총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계정이다.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금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다.

<소득공제 안내>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개인·법인대표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6.6%~16.5%
개인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6.5%~38.5%
법인 대표	4,000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6.5%~37.5%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38.5%~46.2%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을 의미한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소득의 분산효과로 인해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낮출 수 있다.

4. 적격증빙서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모든 일을 지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거래에 관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직원카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5. 소액 간이 영수증

간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비용의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구분	접대비	접대비 외의 지출
불인정 금액기준	건당 1만 원 초과분	건당 3만 원 초과분
개인카드사용분	필요경비불산입	업무관련지출은 경비인정
다른가맹점 명의사용분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
적격증빙 미수취시	필요경비불산입	업무관련인 경우 경비인정 2%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6.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 비용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거래처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한도 20만 원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한다.

접대비란 접대비·교재비·기밀비·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예로는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및 선물 등이 해당되며,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거래유지와 관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세법상 한도 내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3,600만 원과 법소정 금액이 한도로 인정된다.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인정한도 ①+②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 원	① 기본금액 3,600만 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	② 수입금액 적용률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0.30%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500억 원 초과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7. 실제로 일할 경우 가족에게 급여지급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세법상 비용처리 해야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8. 고용중대세액공제

최근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이다. 고용중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수도권은 1,10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모든 기업이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은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중대세액공제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 원	770만 원	450만 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1,1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공제기간	해당년도 포함하여 3년간			2년간

<고용중대세액공제 근로자 기준>

구분	해당기준	제외기준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법인의 임원
청년 정규직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대 보험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지원 대상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